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9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6296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redacted] 주식회사

2. [redacted]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10. 30.

판 결 선 고 2015. 11. 27.

주 문

1. 피고가 2014. 2. 10. 원고 [redacted]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5,384,090원, 농어촌특별세 21,538,390원, 등록세 215,384,090원, 지방교육세 40,509,95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중 취득세 860,000원, 농어촌특별세 86,000원, 등록세 860,000원, 지방교육세 172,0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378,39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945,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2. 10. 원고 [redacted]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389,080원, 농어촌특별세 1,538,890원, 등록세 15,474,830원, 지방교육세 2,904,4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9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redacted]주식회사(이하 '원고 [redacted]'라 한다)에 대한 처분

1) 원고 [redacted]는 2009. 8. 25.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설립된 [redacted]로서 같은 달 31. 서울 금천구 시흥동 113-119 외 12필지 토지(82,630.6㎡,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가격 3,85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50%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3,85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85,000,000원, 등록세 3,850,000,000원, 지방교육세 770,000,000원, 합계 8,855,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3년에 실시된 서울특별시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 시흥PFV가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redacted]㈜ 등 4개의 유동화전문회사(이하 포괄하여 [redacted]'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redacted]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redacted]은 [redacted]㈜에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약칭 'ABCP')을 발행하여 지급받은 2,400억 원을 2009. 8. 31. 원고 [redacted]에게 대여하였으며, 원고 [redacted]는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9

대한 이자 12,834,232,875원(이하 '이 사건 제1 이자'라 한다)을 [redacted]에게 선급이자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이자는 기업어음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취득관련 간접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14. 2. 10. 원고 시흥PFV에게 누락금액 12,834,232,8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15,384,090원, 농어촌특별세 21,538,390원, 등록세 215,384,090원, 지방교육세 40,509,95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위 각 세목을 포괄하여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3) 원고 [redacted]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5. 원고 시흥PFV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 원고 [redacted]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을 일부 감축하여 위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860,000원, 농어촌특별세 86,000원, 등록세 860,000원, 지방교육세 172,0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378,39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945,8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 독산복합시설개발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원고 독산PFV'라 한다)에 대한 처분

1) 원고 독산PFV는 2009. 8. 25.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2010. 3. 29.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13 일원 토지(16,157.7㎡,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가격 58,673,127,98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50%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586,731,270원, 농어촌특별세 58,673,120원, 등록세 586,731,27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9

지방교육세 117,346,250원 합계 1,349,481,91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3년에 실시된 서울특별시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 독산PFV가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3. 26. 농업협동조합중앙회[redacted]은행 및 [redacted] 주식회사(이하 포괄하여 "[redacted]"이라 한다)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약정에 따라 [redacted]는 25,000,000,000원을, [redacted]축은행은 3,000,000,000원을 각 원고 [redacted]에게 대여한 후 원고 [redacted]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2,499,287,655원을 차입일로부터 1년간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redacted] 주식회사(이하 [redacted]"이라 한다)는 미래에셋증권㈜에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하 [redacted]이 발행한 기업어음과 통틀어 '이 사건 기업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받은 180억 원을 원고 [redacted]에게 대여한 후 원고 [redacted]가 2010. 3. 29.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952,767,123원(이하 "이 사건 제2 이자"라 한다)을 선급이자로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제2 이자는 기업어음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취득관련 간접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14. 2. 10. 원고 [redacted]에게 누락금액 952,767,123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15,389,080원, 농어촌특별세 1,538,890원, 등록세 15,474,830원, 지방교육세 2,904,40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위 각 세목을 포괄하여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3) 원고[redacted]는 이 사건 제2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5. 원고 독산PFV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9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 2 이자는 그 성격상 또는 관련 세법상 수수료가 아닌 이자비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1, 2 이자에 수수료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제1, 2 처분은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엄격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 이자에 한정되는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시흥 대주단 및 엠에스독산으로부터 각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제1, 2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서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제1, 2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시흥PFV가 시흥 대주단과 체결한 대출약정서상 차입금액 및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9

대출일자	2009. 8. 31.(대출기간 : 2009. 8. 31. ~ 2010. 2. 26.)			
총대출금	2,400억 원			
시행사 및 차주	원고 시흥PFV			
대주단	대주명	대출명	대출금액	이자율
	[redacted]일차㈜	대출A-1	750억 원	10.80%
	[redacted]이차㈜	대출A-2	750억 원	10.80%
	[redacted]삼차㈜	대출A-3, 4	750억 원	10.80%
	[redacted]사차㈜	대출B	150억 원	11.30%
자금보충의무자	[redacted](주)			
대리금융기관	[redacted](주)			

2) 원고 시흥PFV가 시흥 대주단과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라 시흥 대주단에게 지급한 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 원).

대출명	대주명	대출금액 (2009.8.31.)	이자차감 (2009.8.31.)	이자지급 (2009.8.31.)	이자지급 (2009.9.2.)
대출A-1	[redacted]㈜	71,006,171,233	3,993,828,767		
대출A-2	[redacted]㈜	71,006,171,233	3,993,828,767		
대출A-3	[redacted]㈜	45,000,000,000		2,404,897,260	
대출A-4	[redacted]㈜	30,000,000,000		17,753,424	1,571,178,082
대출B	[redacted]㈜	14,147,253,425	852,746,575		
소계		231,159,595,891	8,840,404,109	2,422,650,684	1,571,178,082
이자 총계			12,834,232,875(정점이자)		

3) 원고 [redacted]가 [redacted]과 체결한 대출약정서상 차입금액 및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대출일자	2010. 3. 29.				
총대출금	460억 원				
시행사 및 차주	원고 [redacted]				
대주단	대주명	대출명	대출금액	이자율	대출기간
	[redacted]중앙회	대출A-1	250억 원	9.00%	1년
	[redacted]은행(주)	대출A-2	30억 원	9.00%	1년
	[redacted]일차㈜	대출B	180억 원	10.50%	6개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9

자금보충의무자	대한전선(주)
대리금융기관	미래에셋증권(주)

4) 원고 [redacted]가 독산 대주단과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라 독산 대주단에게 지급한 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대출명	대 주 명	대출금액 (2010.3.29.)	이자차감 (2010.3.29.)	이자지급 (2010.4.29.~ 2011.3.28.)	비 고
대출A-1	농협협동조합중앙회	25,000,000,000		2,231,506,843	
대출A-2	진흥상호저축은행(주)	2,969,650,000		267,780,812	
대출B	엠에스독산제일차(주)	16,913,845,487	952,767,123 (쟁점이자)		
소 계		44,883,495,487	952,767,123	2,499,287,655	
이자 총계			3,452,054,77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제1, 2 이자의 성격

피고는, 이 사건 제1, 2 이자가 이 사건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할인금 및 각종 수수료 등 제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4, 6,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각각 대주단과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이자와 관련하여 총 대출금, 이자율, 이자기간(대출금의 인출일로부터 상환기일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9

지, 1년을 365일로 하고 해당 이자기간 동안의 실제 일수를 기초로 계산) 등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이 사건 제1, 2 이자로 지급한 점, ② 위 대출약정서에 의하면, 각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 및 수수료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 이자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차주인 원고들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의 각 지급수수료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실제로 원고들은 위 대출약정에 따른 각종 비용(신용평가 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자금관리수수료, 법률자문료, 신탁보수료 등)을 이 사건 제1, 2 이자와 별도로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은 시흥 대주단 및 엠에스독산에게 각각 이 사건 제1, 2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를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점, ⑤ 이 사건 제1, 2 이자에 적용된 이자율이 원고들의 신용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다거나 달리 이 사건 제1, 2 이자에 수수료 기타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 이자는 위 각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서, 이 사건 기업어음 발행과 관련한 수수료 기타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 정하도록 위임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7호로 개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9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대하여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1].

2)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는 제1항에서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 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본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위 제2항의 '준공된 날'에 대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준공된 날로 보되,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

1) 원고 시흥PFV의 이 사건 제1 토지 취득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제82조의3 제1항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9

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을 준공된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호).

3)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의 범위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는 그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이하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의 경우에, 그 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이 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공통되므로 그 건설자금이자는 같은 방식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55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면서 그 이자를 지출한 경우,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와 마찬가지로 특정차입금의 차입일부터 그 토지에 대한 취득일인 잔금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시흥 대주단 및 엠에스독산으로부터 각각 2,400억 원 및 18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선급 방식으로 이 사건 제1, 2 이자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제1, 2 토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건설자금이자가 선급 방식으로 대출금의 상환기일 이전에 모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는 차입일부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9

상환기일까지의 이자를 미리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차입일부터 위 토지의 취득일까지 발생한 이자 부분만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 부분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 시흥PFV의 자금 차입일은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일인 2009. 8. 31.이고, 원고 독산PFV의 자금 차입일 역시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일인 2010. 3. 29.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차입금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취득일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제1, 2 이자는 위 토지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제1, 2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강효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9

판사 장인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9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9

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9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9

른 날

3.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